

오렌지라이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거주자 用)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소액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액주주가 아닌 개인 대주주(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5억원 이상인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개인 소액주주 및 개인 대주주 모두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주주(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5억원¹ 이상인 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3)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총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가격인 1주당 43,336원과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한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 (4)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22퍼센트
3억원 초과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27.5퍼센트)

단, 대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

¹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 시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적용

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 (5) 양도소득세는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격으로서, 오렌지라이프 주식 최종거래일인 2020년 1월 21일 종가 적용)을 의미합니다.
- (2)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3) 위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주주(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5억원² 이상인 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3)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로부터 지

²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 시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적용

급받는 오렌지라이프 주식 1주당 가액(오렌지라이프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액은 1주당 28,235원)입니다.

- (4)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22퍼센트
3억원 초과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27.5퍼센트)

단, 대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 (5) 해당 양도소득세는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위 제1항 참조)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2)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3) 위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II. 유의사항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

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2200-8944(오렌지라이프 IR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